

제4차 산업경제위원회
2010.12.15 (수) 16:30

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
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0년 12월 3일
-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8일

3. 제안 이유

- 충북도에서는 청주 ~ 충주를 연결하는 국도 36호선 주변 7개 시·군을 태양광산업 특구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함.
- 태양광산업 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충청북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함에 따라,
-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함.

4. 특구개요

- 명칭 :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
- 범위 : 청주 ~ 충주를 연결하는 국도 36호선 주변

- 해당지역 : 7개 시·군(청주, 충주, 청원, 증평, 진천, 괴산, 음성)
- 추진주체 : 충북도 및 7개 시·군 공동
- 특구사업내용 : 9개 사업

5. 검토의견

- ‘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’은 태양광 산업을 충북도의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육성시켜 지역별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킴은 물론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당한 산업이라고 판단됨.
- 따라서 충청북도의회에서는 본 특구지정에 대한 찬성의견을 내어 지역의 단합된 의지로 사업성공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